

#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3월 23일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6. 4. 3.)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홍섭 해양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해양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해양기업 지원 및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첨단해양R&D센터를 전문성과 안전성, 공공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첨단해양R&D센터」 운영을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함.

다.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회 동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위탁)

라.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첨단해양R&D센터 운영

○ 위탁(대행)사무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 위탁(대행)사무 추진 필요성

- 해양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과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 및 취·창업 프로그램 등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인 첨단해양R&D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 시설 관리와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도시재생과의 「포항항 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사업 공모로 첨단해양R&D센터 운영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사업 종료로 자체 재원을 통한 운영 필요

○ 시설개요

- 시설명 : 첨단해양R&D센터
- 위 치 : 포항시 남구 운하로 266(송도동 254-102번지 일대)
- 사업비 : 252억원(국비 114, 도비 15, 시비 123)
-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 건물규모 : 지하 1층/지상 9층

(대지면적 7,781㎡, 연면적 9,466㎡, 건축면적 1,145㎡)

구 분	주요시설 및 용도	비고
지상 9층	코워킹 스페이스	
지상 8층	입주기업 사무실	
지상 7층	입주기업 사무실, 중회의실	
지상 6층	입주기업 사무실, 송도 해양데이터 관제실	
지상 5층	입주기업 사무실	
지상 4층	입주기업 사무실	
지상 3층	입주기업 사무실, 소회의실	
지상 2층	편의시설(카페), 전시시설(홍보관), 공동 실험실	
지상 1층	공장형 실험실, 여과기 운영사무실, 해양 e모빌리티 실험실	주차 4대
지하 1층	지하 주차장, 방재실, 통신실, 펌프실, 전기실	주차 95대

○ 위탁사무 내용

- 총사업비 : 2,100백만원(시비 2,100백만원)
- 사업내용 : 첨단해양R&D센터 유지·관리, 입주 기업(관) 유치 및 홍보, 입주기업(관) 관리 등
- 기대효과 : 포항 해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 첨단해양R&D센터 내 입주기업(관) 유치 및 효율적 관리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내용
계	2,100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시설유지관리비 1,655 지급수수료(회계정산) 6 공공요금(수도·광열비) 439
도비	-		
시비	2,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장준호)

- 본 동의안은 「첨단해양R&D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첨단해양R&D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요구,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사후 동의를 통해 절차적 보완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건은 당초 국비 지원사업에 해당하여 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재원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탁 사무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위탁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3년간 21억원 전액 시비)에 비해 입주율등 운영성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익구조 개선 및 성과지표의 구체화가 요구되는 바, 운영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